

대법원 2024도29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고인 1은 피해아동 A의 계모, 피해아동 B, C의 친모이고, 피고인 2는 피해 아동들의 친부로서, ①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모하여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상습으로 피해아동 A를 유기·방임하고, ② 피고인 1이 피해아동 A를 학대하여 살해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① 성인과는 달리 아동이 갖는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 미성숙성, 의존성 및 아동학대범죄의 지속성, 반복성, 누적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살해죄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판시한 다음, 피고인 1에게 아동학대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②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배척하여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 피고인 1 ⇒ 피해아동 A(당시 11세)의 계모, 피해아동 B(당시 3세), C(당시 2세)의 친모
- ▣ 피고인 2 ⇒ 피해아동들의 친부

나.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 2022. 3. 9.경 드럼스틱으로 피해아동 A의 종아리를 10회 가량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3. 2. 초순경까지 30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2022. 8. 25.경 피고인 2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 A에게 욕설하는 등 2021. 4. 6. 경부터 2023. 1. 23.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22. 9.경부터 2023. 2. 3.경까지 매일 아침 성경 필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A가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방에서 못 나오게 하거나 벌을 주거나 때리는 등 피해아동 A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여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22. 11. 24.경부터 2023. 2. 7.경까지 피해아동 A를 이른바 '홈스쿨링'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성경 필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여 방임
- 2023. 1.말경 피해아동 A가 불상의 원인으로 고환부위에 상처를 입어 피부 괴사를 일으키고, 불상의 원인으로 입술 부위와 입 안에 화상을 입어 음식 섭취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즉시 병원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이를 피고인 2에게 숨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23. 2. 7. 피해아동 A가 사망할 때까지 방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¹⁾ 위반(아동학대살해)

- 피고인 1이 장기간 피해아동 A를 학대하고 방임하여 피해아동 A의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해지고 신체 전반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였으며

1)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로, 피고인1은 피해아동 A에 대한 학대 행위의 강도를 더욱 높여 심하게 때릴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아동 A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는데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2023. 2. 7. 피해아동 A의 전신에 형성된 여러 둔력손상으로 발생한 내부출혈로 인해 피해아동 A가 사망하게 함

- 2023. 2. 4. 오후 알루미늄으로 된 선반받침용 봉으로 피해아동 A의 팔, 다리, 옆구리 등 전신을 수습 회 때림
- 2023. 2. 5. 17:00경부터 2023. 2. 6. 03:00경까지, 같은 날 03:30경부터 09:25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아동 A를 의자에 수건과 커튼 끈으로 결박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아동 A를 감시함
- 2023. 2. 6. 09:25경 선반받침용 봉 및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팔, 다리, 옆구리 등 전신을 수습 회 때리고, 같은 날 오전 다시 선반받침용 봉으로 피해아동 A의 팔, 다리 등 전신을 수습 회 때리고, 같은 날 13:00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아동 A를 방 책상 의자에 커튼 끈으로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함
- 2023. 2. 6. 18:10경 피해아동 A가 2023. 2. 6. 18:10경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는 등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2023. 2. 7. 00:49경 홈캠을 통해 피해아동 A가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함

(2) 피고인 2

▣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 2022. 1. 13.경 드럼스틱을 손에 잡고 흔들며 피해아동 A에게 “너는 한번만 더 짜증내거나 거짓말하면 혼자서 미친 짓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좋아리야 계속 늘어날 거야. 피 터지도록. 이걸로 안 때려 두꺼운 거 있지 안방에. 그걸로 두드려 팻 거야”라고 말하는 등 2021. 4. 6.경부터 2023. 1. 23.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2022. 4. 23.경 드럼스틱으로 피해아동 A의 종아리를 4-5회 가랑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3.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아동 A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22. 9.경부터 2023. 2. 3.경까지 매일 아침 성경 필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A가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방에서 못 나오게 하거나 벌을 주거나 때리는 등 피해아동 A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여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 피해아동 A가 피고인 1의 지속적인 학대행위에 노출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인 1을 제지하거나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고, 피해아동 A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았으며, 피해아동 A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
-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22. 11. 24.경부터 2023. 2. 7.경까지 피해아동 A를 이른바 '홈스쿨링'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성경 필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여 방임

2. 소송경과

가. 제1심 ➡ 피고인 1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부분 이유 무죄, 나머지 유죄

- ▣ 피고인 1에 대하여 피해아동 A에 대한 아동학대살해의 고의를 부정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함.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1 ⇒ 징역 17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 몰수
- 피고인 2 ⇒ 징역 3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

나. 원심 ➡ 제1심 판단 유지

-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변경으로 제1심을 직권으로 파기하였으나, 제1심과 동일한 판단
- 피고인 2 및 검사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피고인 1에게 아동학대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 피고인 2가 피해아동 A를 유기·방임하였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 ▣ 피고인 2의 상고 기각

다. 판단 내용

- ▣ 검사의 상고이유[피고인 1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부분]
 - 판단 기준이 되는 법리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의 인정 기준은 살인죄에서의 범의의 인정 기준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

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동은 골격이나 근육, 장기 등이 발달과정에 있어 손상에 취약하고, 심리적·인지적으로도 미성숙하여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표현방식도 성인과 같지 아니하다. 아동의 보호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은 이러한 의존성,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기 어렵고, 그 학대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학대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질러지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누적·심화되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고 아동학대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아동과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발달정도와 건강상태,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체격과 힘의 차이,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반복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학대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하여진 경우 그로 인해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의 장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피해아동의 나이·발달정도나 취약해진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피해아동의 사망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인 피고인이 그의 학대범죄로 생명침해의 위험에 이른 피해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나 실효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였는지 혹은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고 방관하거나 유기하였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큼
 - 피고인 1의 학대행위로 피해아동 A의 건강과 발달상태가 점점 나빠졌고, 피고인 1이 피해아동 A의 주양육자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피해아동 A의 건강이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가 피해아동에게 점점 누적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임
 - 피해아동 A가 등교를 중단한 2022. 11.경 이후 피고인 1의 학대행위가 지속성뿐 아니라 빈도가 늘어가고 내용이 중하여졌으며, 피고인 1은 피고인 2

에게 피해아동 A에 대한 적대감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피해아동 A에 대한 미운 감정이나 적대감이 증폭됨

- 피해아동 A는 사망 무렵 몸무게가 29.5kg으로까지 감소하여 소아표준성장도표상 하위 3~5%이고, 체질량지수 역시 하위 0.2%일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매우 피폐하여 신속한 치료와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체격과 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성인 여성인 피고인 1의 학대나 폭력을 더 이상 감내하거나 버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 1은 2023. 2. 6. 18:10경 피해아동 A와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아동 A가 제대로 걷지 못하며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2023. 2. 7. 심야에 피해아동 A가 통증으로 아파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대로 방치함
- 피고인 1은 피해아동 A의 사망 직전 활력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실효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2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귀가할 것을 재촉하고 집안에 설치된 홈캠을 휴지통에 버리는 등 기존의 학대행위 정황이 담긴 증거를 삭제하려고 시도함

■ 피고인 2의 상고이유

-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판결의 의의

- 2021. 3. 16.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된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하여 아동학대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기준을 판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아동학대살해의 고의를 인정함